

##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감염확산억제기간(오키나와현 대처방침)

**【요청 기간】 2021년 10월 1일(금)~10월 31일(일)**

### 실시 내용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억제를 목표로, 사람 사이의 접촉기회를 줄이기 위해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(이하 '법'이라고 한다.) 제24조에 따라, 현민·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력 요청을 실시함.

### 구 역

오키나와현 전역

## 【감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】

### 현황

- 긴급사태선언 해제 이후 기간은, 감염 재확산을 저지할 중요한 국면입니다.
- 양성자 수가 감소해 긴급사태는 해제되었지만 의료 국면은 최고 단계인 5단계에 머물러, 일반 진료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감염자 감소 경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델타 변이주가 기승을 부려 여전히 지역 내 유행이 계속되고 있으며, 가정 내 감염으로 인한 미성년 양성자가 전체의 30%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-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아이들 사이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
- 9월 말, 현민의 60%가 1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. 양성자의 90% 가까이가 백신 접종 미완료자이며, 중증화 예방·발병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.
- 신종 코로나는 일단 감소되더라도 감염방지대책을 게을리 하면 금새 재확산(리바운드) 됩니다.
- 자기 자신, 소중한 사람,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「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다」를 철저히 지키며, 「손 씻기 등 위생 철저」「마스크 착용」「거실 환기」「매일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을 관찰」,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면 가정 내 격리 및 휴식을 취하며, 가족이 있을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, 현 콜센터에 상담·근처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 주십시오.

### 현의 방침 및 노력

- 이 기간 동안 감염 확산을 억제시켜, 의료·경제·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생각한다. 순조롭게 감염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종료 시기를 앞당긴다.
- 단, 감염 확산 경향(신규 양성자가 지난 주 대비 증가하는 경우)이 보이는 경우,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법24조 제9항을 토대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다.
- 제6파에 대비해 의료제공체제 확충을 위해 노력한다.

##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### 외출 및 이동에 관한 요청

- 감염 확산 억제 기간 중에는 외출과 이동을 삼가며, 특히 야간 외출을 자제하고, 혼잡한 시간과 장소를 피할 것.
- 도도부현간 왕래의 필요성을 잘 검토할 것.  
출발 전에는 **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PCR 검사 등을** 받을 것.
- 방문 자제를 요청중인 낙도와는 왕래를 자제할 것. 기타 낙도에 대해서도 왕래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. 또한, **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사전 PCR 검사 등을** 받을 것.
- 다수 인원의 계모임, 비치 파티 등 음식을 동반하는 이벤트 및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사람과의 모임을 삼갈 것.

###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

- 12세 이상이신 분은, 가장 강력한 감염증 대책인 백신을 접종하도록 부탁드립니다.
- 아이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, 학원, 교습소 등 감염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.
- ◆ 2차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이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등 감염대책을 계속해 주십시오.

## 현민 여러분께 드리는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### 회식(식사)에 관한 요청

- ◆ 회식은 4명 이하 · 2시간 이내로 하며, 되도록 동거가족이나 항상 같이 있는 분과 함께.
  - ◆ 음식점이 요구하는 감염방지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(큰 소리를 내지 않기, 대화 중엔 마스크 착용 등)
  - ◆ 감염방지대책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는 음식점은 이용을 삼가며, 「감염방지대책인증점」을 이용해 주십시오.
  - ◆ 영업시간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등은 이용하지 마십시오.
  - ◆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을 느낀다면 참가하지 않고, 참가시키지 않는다.
  - 자택 등 음식점 외의 회식도 마찬가지로 주의
- ※불특정 다수가 모여, 혼잡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(특히 음식을 동반하는 자리)

※4명 이하, 3밀을 피한다, 2시간 이내, 1차가 끝나면 귀가

### 감염방지대책 철저

- 매일 체온을 측정하는 등 건강관찰을 하며,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, 통근, 통학, 외출을 자제.
-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땐 근처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며, 발열이 있다면 현 콜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.
- 기본적인 감염대책을 철저히【마스크 착용, 자주 손 씻기, 환기 철저】

## 방문자(오кина와에 방문을 검토중인)여러분께

【방문 전 : 협력 의뢰】

【방문 후 : 법 제24조 제9항에 따른 협력의뢰】

### 왕래에 관한 부탁

- 거주지 지사의 도도부현간 이동에 관한 요청에 따라, 신중하게 검토해 주십시오.
- 현 방문 전에 충분한 사전 건강관찰과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.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엔 현 방문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도록 부탁드립니다.
- 현 방문 전에, **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PCR 검사 등에서 음성임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.**  
※ 방문 전에 검사를 받을 수 없었던 분은, 나하공항, 미야코공항, 시모지시마 공항, 신이시가키공항, 구메지마공항 도착시에 PCR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
- 현 도착 후, 영업시간단축요청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, 「감염방지대책 인증점」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- 오кина와 방문 중에 건강에 이상 또는 발열 생긴 경우에는 여행자 전용 상담 센터 오кина와에 상담 바랍니다.

【여행자 전용 상담 센터 오кина와 (「TACO」 : Traveler's Access Center Okinawa)】

※ 전화번호 : 098-840-1677

운영시간 : 8:00~21:00(연중무휴)

# 음식점 등에서의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<p><b>대상시설</b></p>	<p>[음식점]음식점(배달·포장을 제외) [유흥시설·결혼식장 등]바, 노래방, 결혼식장 등에서 식품위생법의 음식점 운영허가를 받은 점포</p>
<p><b>요청 내용</b></p>	<p><b>[영업시간단축 등의 협력 요청]</b>※영업시간이 5시부터 20시까지인 점포는 협력금 대상 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<u>영업시간을 5시에서 20시 사이로 한다(포장·배달 제외)</u></li> <li>➢ <u>(주류 제공은 11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)</u></li> <li>➢ ※「감염방지대책인증점」은 <u>영업시간을 5시부터 21시까지로 (주류 제공은 11시부터 20시까지)</u>로 할 수 있다.</li> <li>➢ 노래방 설비 이용 자제(음식을 주로 하는 점포 중 노래방 설비가 있는 곳)</li> <li>➢ <u>한 그룹·한 테이블 원칙 4명 이내(예외 : 도움이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)</u></li> </ul> <p><b>[감염방지대책 협력 요청]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➢ 법 시행령 제12조로 규정하는 각 조치를 실시할 것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종업원에게 검사 권장, 입장자 정리유도, 시설 환기</li> <li>• 발열 및 기타 증상이 있는 자의 입장 금지</li> <li>• 손 소독 설비 설치, 사업을 행하는 장소의 소독</li> <li>• 마스크 착용 및 기타 감염 방지에 관한 조치 홍보</li> <li>•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 등 감염방지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의 입장 금지(대화 중 마스크 착용)</li> <li>• 아크릴 판 설치(또는 좌석 간격을 1m 이상 확보)</li> </ul> </li> <li>➢ 현·시정촌이 실시하는 감염방지대책 촉진을 위한 순회사업에의 협력</li> <li>➢ 「감염방지대책 인증점」의 취득 권장</li> </ul>

## 행사 개최에 관한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- 주최자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정부의 접촉확인어플 (COCOA) ·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 대책 퍼스널 서포트(RICCA) 도입 또는 명부 작성 등의 추적대책을 철저히 할 것.
- 전국적인 이동을 동반하는 이벤트 또는 참가자가 1,000명을 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의 개최요건 등에 대해, 현과 사전에 상담할 것. **현의 요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연기·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.**
- 전국적인 감염 확산이나 행사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해, 정부가 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수정 또는 수용률 요건, 최대수용인원의 재검토를 행하는 경우, 신속하게 대응할 것.
- 방문자에게, **백신 접종 또는 사전 PCR 검사 등을 통한 음성 확인을 권장**할 것.
- 이벤트 개최 요건은 아래와 같다 (적절한 감염방지대책이 실시되는 것이 전제)

기간	수용률※3		최대수용인원※4
10월 1일 ~ 10월 31일※1	<b>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</b> · 클래식 음악 콘서트, 연극 등, 무용, 전통예능, 예능·연예, 공연·식전, 전시회 등 · 음식을 동반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(※2)	<b>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예상되는 것</b> 록, 팝 콘서트, 스포츠 이벤트, 공영경기, 공연(네러티브 아트 등), 라이브하우스·나이트클럽에서의 행사 등	5,000명 이하
	<b>100% 이내</b> (자리가 없는 경우엔 적절한 간격)	<b>50% 이내</b> (자리가 없는 경우엔 충분한 간격)	

※1 : 정부의 사무연락에 근거해,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1개월간은 경과조치기간의 규모요건을 적용한다.

※2 : 「행사 중 식사를 동반하는 프로그램」은, 필요한 감염방지책이 담보되어, 행사 중의 발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, 「큰 소리를 내는 합성·성원 등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것」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.

※3 : 위 분류는 예시이며, 합성이 있음·없음은 개별 행사의 실태에 맞추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.

※4 : 수용률과 최대수용인원 중 작은 쪽이 한도(양 쪽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전제)

○개최 시간은 5시부터 21시까지로 하도록 요청한다(협력의뢰)

## 시설에 대한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### 상업시설, 집객시설에의 요청

특조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으로 규정하는 운동시설, 유기장, 영화관 등의 시설에 아래의 감염대책을 요청한다. 또한, 각 방침의 실시상황을 홈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공표할 것.

- 입장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정리·유도, 입장자의 인원 관리·인원 수 제한
- 대화 등 비말로 인한 감염 방지에 효과적인 조치(특히 푸드코트)  
(아크릴 판 등의 설치 또는 좌석 간격의 확보, 환기 철저 등)
- 손 소독설비 설치와, 이용자에의 손 소독 부탁, 종업원에의 PCR 검사 등 권장
- 발열 등 유증상자의 입장을 막기 위한 조치(입점 시 체온검사·열화상카메라 설치)
- 입장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
-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에 응하지 않는 자의 입장 금지(이미 입장한 자의 퇴장도 포함)
- 게임센터, 스포츠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는 입장 전의 증상확인, 체온 검사, 손 소독을 요구할 것

### 상업시설, 집객시설에의 부탁

- 특조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동시설, 유기장, 영화관 등의 시설은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21시, 그 외에는 2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할 것(강제력 없는 협력의뢰)

※강제력 없는 협력의뢰(부탁)의 경우, 협력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 사업자 여러분께의 요청

【법 제24조 제9항 : 협력요청】

### 사업자 · 경제계에서의 요청

- 직장에서 백신 접종을 권장할 것(접종하기 쉬운 환경의 정비 등)
-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며,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분은 출근하지 · 시키지 않을 것
- 재택근무(텔레워크), 시차출근의 확대 등, 통근 · 근무 시의 밀집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
- 자사의 종업원에게 영업시간단축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포를 이용하지 않도록 요구할 것
-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직장에서의 이동(휴게실 · 탈의실 · 흡연실 · 사원식당 ) 에 주의할 것

### 교통사업자에서의 요청

- 주요 터미널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할 것
- 항공, 선박, 버스, 택시 등의 공공교통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대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

## 각 시정촌과 현의 연계 방침 실시

- 방재무선, 홍보차 등을 활용한 지역주민에의 감염방지대책의 홍보 및 자치회 등에서의 협력요청.
- 음식점등에서의 순회(감염방지대책, 영업시간단축요청에 철저히 응하도록 부탁 )
- 각종 시설, 공원 등 관리자로서의 방침(노상, 공원 등에서의 집단음주에 대한 주의환기를 포함).
- 발열시의 검진방법의 홍보(불필요한 구급검진 억제, 항원검사 키트의 활용방법, 오키나와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담 콜센터 098-866-2129).
- 시정촌의 방침 중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(자택요양지원, 농후접촉자용 숙박시설 조성 등).
- 시정촌에 양성자 정보를 제공해, 자택요양자 등의 지원과 연계 실시.
- 보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되, 감염이 확산중인 지역에는 가정보육에의 협력 또는 임시휴원 등을 검토하도록 의뢰한다. 단, 의료종사자와 같이 사회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에 종사하여, 업무를 쉴 수 없는 보호자에게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.

## 학교에의 요청

- 위생관리 매뉴얼 등을 토대로, 학교교육활동 및 학생 기숙사에서 감염방지대책을 철저히 할 것. 단, 학교 등의 감염 상황에 따라, 학교 폐쇄 등을 실시할 것.
- 아동 및 학생은 가정에서 철저히 건강관찰을 하며,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삼갈 것
- 학교 행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지역의 감염상황을 고려해 장소나 시간, 개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할 것
- 부활동·과외활동에서의 감염 리스크가 높은 활동은 제한 또는 자제할 것  
(부활동 전후로 회식이나 현 내외에서의 합숙을 가지지 않는 것 등)
- 대학, 전문학교는 감염방지와 대면·원격수업의 효과적 실시를 통해 양립을 목표로 적절하게 대응할 것
- 대학은 학생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에 대해 4명 이하·3밀을 피하며·2시간 이내로 하도록 철저히 주의 환기할 것.

## 공공시설의 방침

- 박물관, 미술관이나 운동시설 등, 현립 공공시설도 철저히 감염방지대책을 지키면서 운영하며, 운영시간은 20시까지로 한다. 시정촌립 공공시설 또한 현과 같은 대응을 요청한다.
- 노상·공원 등에서의 집단 음주 등, 감염 리스크가 높은 행동을 피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가 주의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.